## 17세기이후 정직계를 개편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

양 영 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것은 당대의 력사적조건에서 그 진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것입니다.》(《김정일전집》제5권 444폐지)

실학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서 당대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17세기초 리수광으로부터 자기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한 실학은 17세기 중엽 류형원에 의해 확고히 형성되였고 18~19세기 중엽 정약용, 박지원, 리규경 등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당시 실학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일련의 개편안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17세기이후 정직계를 개편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와 그 진보성과 제 한성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15세기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에서 기본으로 된것은 정직계였다. 정직계에는 동반계와 서반계, 종친계, 의빈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우선시된것이 정직동반계였다. 정직동반계에는 봉건국가의 주요관청의 장관들은 물론 당상관급관리들이 포함되여있었다.

봉건국가는 이로부터 정직계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였다.

그러나 정직계는 16~17세기에 이르러 극도로 문란해졌다.

그것은 15세기 문관들만이 받게 되여있던 정직동반계에 무관들뿐아니라 일반출신의 사람들도 임명된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당시 일반출신의 사람들이 봉건국가가 제정한 군량을 바치면 높은 품계를 준 사실, 17세기 중엽부터 실직벼슬을 가진 량반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봉건정부가 그것을 막을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탄하기까지 한 사실, 정6품 현감벼슬을 하던 량인출신의 사람들도 세도대신에게 뢰물을 바치면 정3품 목사벼슬까지 쉽게 오를수 있었던 사실들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실학자들은 품계종류들중에서도 기본인 정직계를 개편할데 대한 일련의 견해들을 내놓았다.

먼저 실학자들이 내놓은 정직계에 대한 개편안을 보기로 한다.

정직계를 개편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첫째로, 정직계에 포함되여있던 종친계, 의빈계를 개편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실학자들은 우선 종친계와 의빈계를 없애고 정직동서반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세기 실학자의 한사람이였던 류형원은 자기의 저서 《반계수록》에서 정직계에는 오직 동반계와 서반계 즉 두 계만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5세기 정직동반계는 오직 문관들만이 차지하였고 정직서반계는 문관과 무관이

함께 차지하였다. 여기서도 정직서반계 상층에는 문관이 차지하고있었다. 당시 정직동반과 서반의 관계에서 볼 때 같은 당상관급의 관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는 문관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동반계가 서반계보다 그 격이 높았다.

정직계에는 동서반계와 함께 국왕의 일가들에게 주는 종친계와 국왕의 사위에게 주는 의빈계도 포함되여있었다.

15세기 당시 종친계를 받은자들은 오직 품계만을 받고 벼슬은 할수 없었지만 그후이러한 제도가 점차 문란해져 국왕의 종친과 의빈들에게도 벼슬이 차례졌다. 특히 17세기이후부터 국왕의 친척들가운데 봉건국가의 높은 벼슬에 임명되는자들도 있었다. 례하면 1663년 2월 국왕의 외척인 김좌명이 차례를 뛰여넘어 공조판서로 임명된 사실\*1, 1668년 1월 국왕의 친척인 장선징이 병조참판으로 임명된 사실\*²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 \*1《현종실록》권5 3년 2월 경오
- \*2《현종실록》권13 8년 1월 경인

종친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이전시기에 볼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였다. 종친들이 관직에 임명되면 종친이라는것을 배경으로 하여 봉건국가정사에 이모저모로 간섭하면서 많은 페단을 가져왔다.

이런 페단으로 하여 봉건관료들속에서는 종친들에게 관직을 주는데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있었다.

《벼슬은 나라의 공적인 도구인것만큼 사적인 은정을 가지고 공론을 무시하면서 헛되이 줄수는 없는것입니다. 병조참판 장선징은 승정원관리의 자리순서에 지장되는것이 있다고 하여 처음 새 품계를 올려주었고 인차 또 발탁하는 은덕을 베풀어주었습니다. 명목이없는 표창과 순차를 뛰여넘는 은총이 임금의 친척에게 차례졌으니 훌륭한 정사에 해를 끼치는것이 큽니다. 선징에게 새로 준 품계와 본 관직에 임명한 지시를 도로 철회하기 바랍니다.》\*1라는 장령 심유의 제의,《종부시가 규률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5부를 시켜 까닭없이 밖으로 나다니는 임금의 집안사람들을 들은대로, 보는대로 통보하라고 하였기때문에 부에서는 하는수없이 통보하는것인데 죄를 지은 임금의 집안사람들은 도리여 서원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못하는짓이 없다. 이것은 규률을 맡아보는 관청을 무시하는것이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서원이나 관령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통보하지 않는다면 종부시에서는 규찰할 길이 없다.…》\*2라고 한 왕의 지시 등은 종친들로 인한 페단을 보여주고있다.

- \*1《현종실록》권13 8년 1월 경인
- \*2《중종실록》권99 37년 8월 계미

우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첫 자료는 나라의 공적인 기구를 가지고 왕족이라고 하여 사적으로 내세워줄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정사에 해로 된다는 장령 심유의 제기 였으며 둘째 자료는 비록 종친들로 인한 정치의 문란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일 반생활에서도 종친들때문에 페단을 일으키는 현상이 많아 왕까지도 종친들을 잘 단속할 데 대한 의견을 승정원에 내려보낸 자료이다.

일반생활에서도 종친들의 잘못을 통보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니 그들이 관직에 등용되

여 일으키는 페단은 더 말할것도 없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렇기때문에 실학자들은 페단만을 일으키는 종친계와 의빈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것을 동반계에 포함시키는것이 편리하다고 보고 개편안을 제기하였던것이다.

류형원은 정직계에 속해있던 종친계와 의빈계를 없애고 그들에게 동반벼슬을 줄것을 주장하였다.

《반계수록》에는 《종친, 부마의 품계는 응당 문관, 무관의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친과 의빈도 본래 다른 관직과 품계가 동일한것이기때문에 다르게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친계와 의빈계를 정직동반계에 포섭시키자고 주장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친계와 의빈계는 점차 정직 동반계와 같이 취급되였다.

다음의 자료는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임금의 집안이 받는 품계인 현록대부와 임금의 사위가 받는 품계인 유록대부는 문관인 대광보국숭록대부와 품계가 같은데 원사신의 후보자추천에서 현록대부와 유록대부를 대광보국숭록대부보다 낮은 품계로 취급하고있다. 인사관계를 맡은 관리의 과오를 추궁할것이다.》\*

- \* 《정조실록》 권5 2년 3월 계해
- ※ 유록대부(綏祿大夫)라는 명칭을 서로 달리 표현하는 자료들이 있다. 《정조실록》에서 는 유록대부라고 표현하였으나 《경세유표》 권3 천관수제 동반관계 설명에서는 수록대부라고 서술하였다. 물론 이 명칭에 대한 한자표기는 같지만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유록대부라고도 할수 있고 수록대부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간혹 유록대부도 있고 수록대부도 있었던것으로 잘못 리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것을 고려하여 유록대부라고 서술하였다.

이 자료는 종친계의 현록대부와 의빈계의 유록대부가 정직계의 최고품계인 대광보국 숭록대부와 같은 품계임에도 불구하고 종친, 의빈계의 품계를 정직동반품계보다 낮게 취 급하고있다는 국왕 정조의 추궁이였다. 결국 이것은 종친계, 의빈계의 품계를 달리 정하 지 말고 정직동반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봉건국가의 립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실학자들은 또한 종친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을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정1품 종친은 돈종보국숭록대부로 불러야 하며 정1품지위에 있는자들에게 는 각각 두 글자씩 덧놓아 문무신하들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종친들은 왕의 친척들이기때문에 그들을 내세워야 한다는 정약용자신의 견해를 반영한것이였다고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실학자들은 종친계에서 국왕의 적자와 서자의 명칭, 그에 따르는 칭호를 달리할것을 제기하였다.\*

\* 《경세유표》 권3 천관수제 종친훈척

정약용은 국왕의 적자는 대군이라고 하고 서자는 군이라고 하며 왕손이하는 일반적으로 군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1품, 2품은 군, 3품은 도정, 4품은 부정, 5품은 부수,6품은 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매 품의 명칭들이 종전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그 차이에 대하여 다음의 표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10, 11, 10 MILE CO				
$N_{\Omega}$	포	15세기	17세기 (류형원)	18세기 (정약용)	
1	정1품	군	군	군	
2	종1품	군	군	군	
3	정2품	군	군	군	
4	종2품	군	군	군	
5	정3품	도정, 정	도정	도정	
6	종3품	부정	정	도정	
7	정4품	수	수	부정	
8	종4품	부수	부수	부정	
9	정5품	령	령	부수	
10	종5품	부령	부령	부수	
11	정 6품	감	감	령	
12	종6품		부감	령	

15, 17, 18세기 종친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

(《경국대전》권1 리전,《반계수록》권15 관직제도,《경세유표》권3 천관수제)

표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15세기 종친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과 실학자들이 제기한 종친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을 대비해보면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다.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의 명칭은 같으나 정3품부터는 매 품계에 따르는 명칭들이 서로 다르다. 즉3품이라도 정3품, 종3품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웠다. 류형원이 제기한 제안은 종래의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것이였다. 그러나 정약용이 제기한 종친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을 보면 3, 4, 5, 6품의 명칭들이 정, 종에 관계없이 서로 같았다. 이것은 종래 매 품계에 따르는 종친들의 명칭을 달리한데로부터 조성되는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였다고 할수 있다.

실학자들은 종친계와 마찬가지로 의빈계도 품계에 따르는 명칭을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대전》)	17세기(류형원) 위	18세기(정약용) 위
	위	위
		ı .
	위	위
	위	위
	위	부위
첨위	부위	첨위
]	부위	첨위
		위 위 첨위 부위

15, 17, 18세기 의빈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

(《경국대전》권1 리전, 《반계수록》권15 관직제도, 《경세유표》권3 천관수제)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1품-정2품까지는 실학자들이 제기한 명칭이 15세기와 같았다. 그러나 종2품에서 류형원은 종래의것을 그대로 두었으나 정약용은 위를 부위로, 정3품에서 류형원은 부위, 첨위를 부위로 하였으나 정약용은 첨위로, 종3품에서 류형원은 첨

위를 부위로, 정약용은 종래의것을 그대로 할것을 제기하였다. 이것 역시 의빈계도 간소 화하자는 실학자들의 립장을 반영한것이였다.

정약용은 외명부(外命婦)와 관련한 명칭도 간소화할것을 제기하였다.\*

- \* 《경세유표》 권3 천관수제 외명부
- ※ 외명부는 국왕의 집안사람이나 친척, 관리들의 안해로서 남편의 관직에 의하여 작위를 받는 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외명부에는 국왕의 유모, 왕비의 어머니, 국왕의 딸, 세자의 딸, 종친의 안해, 문무관리의 안해가 속한다. 외명부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작위를 받지만 경제적인 보장은 없고 명목상의 대우이다. 여기에서는 외명부에 올라있는 모든 녀자들에 대해서 론하지 않고 왕의 친척들에 한해서만 서술하였다.

지잉크의 몸게에 따드는 잉잉								
	왕비의 어머니		임금의 딸		세자의 딸		종친의 안해	
	15세기	17세기	15세기	18세기	15세기	17세기	15세기	18세기
정1품	부부인	부부인		공주, 옹주			부부인, 군부인	부부인
종1품							군부인	군부인
정2품					군주	군주	현부인	현부인
종2품							현부인	현부인
정3품					현주	현주	신부인, 신인	숙부인
종3품							신인	숙부인
정4품							혜인	숙인
종4품							혜인	숙인
정5품							온인	숙인
종5품							온인	숙인
정6품							순인	공인

외명들의 품계에 따르는 명칭

15세기 외명부에 속한 품계에 따르는 명칭은 부부인, 군부인, 현부인, 신부인, 신인, 혜인, 온인, 순인 8개의 명칭으로 불리웠다.

정약용은 이것을 부부인, 군부인, 현부인, 숙부인, 숙인, 공인 6개의 명칭으로 간소화하며 더우기 아무런 품계에도 속해있지 않던 공주와 옹주를 정1품에 소속시킬것을 제기하였다. 특히 종2품까지는 문무관리들의 처들에 대한 명칭과도 완전히 구별되게 하였으며 종친들의 안해인 경우에도 종3품까지만 부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할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3품까지만을 중요하게 내세우려는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립장을 대변한것이라고할수 있다.

실학자들은 또한 종친계, 의빈계를 받은자들도 조회에 참가시킬것을 제기하였다.

이전시기에는 종친들이 조회에 참가하는것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것은 국왕의 전제 권을 강화하는데서 왕족출신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것이 저들의 통치를 보장하는데서 유리하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류형원은 모든 왕족에게 주는 관직은 따로 일정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왕족으로서 실직을 가지고있지 않더라도 조회와 축하, 입번(入番)에 관한 의식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식과 관련한 절차와 함께 이것을 어기는 경우 받게 되는 제재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종친들을 10개의 번으로 나누어 왕궁을 숙위(수직하면서 지킴)하게 하고 매월 초하루날에 모여서 조회를 하며 만일 사고가 없이 당번이나 조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3개월분의 록봉을 중지할것이며 두차례의 조회나 당번에 결석하면 철직시켜야한다고 제기하였다.

이것은 종전에 전혀 볼수 없었던 일이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국왕의 친척들이 국가조회에 참가하도록 한다는것이였다.

종친들을 조회에 참가시킨다는것은 문무관리들과 꼭같이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아마 류형원은 종친들도 일반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에 참가함으로써 마음대로 행동하 지 말고 봉건적질서대로 행동할것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을것 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종친들도 봉건국가의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 하기 위한것이였다고 생각한다.

정직계를 개편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둘째로, 정직계의 매 품계를 단일화하며 그 품계에 따르는 명칭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는것이였다.

실학자들은 우선 정직계의 동반계를 단일화할것을 제기하였다.

15세기에 제정된 정직계를 보면 정1품-종6품까지 매 품과 계에는 각각 2개씩 있었다. 례하면 1품은 정과 종 2개로 구분되여있었고 정1품도 대광보국숭록대부와 보국숭록대부, 종1품도 숭록대부와 숭정대부로 나누어져 1품에는 모두 4개의 계가 있었다. 이러한품계구분원칙에서 보면 정직계의 등급은 정1품-종6품인 선교랑, 선무랑까지 모두 24등급이나 되였다.

실학자들은 정직계의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여 매 품계와 품계에 따르는 명칭을 간소화할것을 제기하였다. 그것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8786/11 8/188/116 87/121 /116						
		15세기	류형원	정약용		
1 22	정	대광보국숭록대부, 보국숭록대부	특진숭록대부, 특진광록대부	대광보국숭록대부		
1품	종	숭록대부, 숭정대부	숭록대부, 광록대부	보국		
2품	정	정헌대부, 자헌대부	정헌대부, 자헌대부	정헌대부		
	종	가정대부, 가선대부	가정대부, 가덕대부	가선대부		
0 17	정	통정대부, 통훈대부	통의대부, 통헌대부	E 키니 H		
3품	종	중직대부, 중훈대부	통훈대부, 중훈대부	통정대부		
4 22	정	봉정대부, 봉렬대부	봉정대부, 봉렬대부	Erlal		
4품	종	조산대부, 조봉대부	조렬대부, 조봉대부	통덕랑		
L 22	정	통덕랑, 통선랑	통덕랑, 통선랑	ᄉᇬᇍ		
5품 -	종	봉직랑, 봉훈랑	봉직랑, 봉훈랑	승의랑		
C V	정	승의랑, 승훈랑	승의랑, 승훈랑	ון ד בן		
6품	종	선교랑, 선무랑	선교랑, 선무랑	선무랑		
7 55	정	무공랑	적공랑, 무공랑	ਗੀ ਹੁਤੀ		
7품	종	계공랑	계공랑, 치공랑	계공랑		

정직동반계의 품계명칭개편에 대한 실학자들의 제안

표계	속
----	---

0 22	정	통사랑	수직랑, 승직랑	ᄉᆡᆲ	
8품	종	승사랑	수무랑, 승무랑	승사랑	
0 2	정	종사랑	등사랑, 승사랑	조 기리	
9품	종	장사랑	종사랑, 통사랑	종사랑	

(《경국대전》권1 리전, 《반계수록》권15 관직제도(상), 《경세유표》권3 천관수제 동반관계)

우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약용의 제안은 류형원의 제안보다 품계의 명칭을 더간소화하였다. 정약용의 제안은 1, 2품에 한해서만 정, 종의 구별이 있고 3-9품까지는 정, 종의 구별이 따로 없었으며 품에 따르는 계역시 따로 없었다. 그러나 류형원의 제안은 품에 따르는 계가 오히려 15세기의것보다 더 복잡하였다. 즉 7-9품까지는 품에 따르는 계가 2개씩 있었다. 이에 대하여 류형원은 1품으로부터 매 품마다 계를 한개씩 두고 3년만에 한번 성적을 심사하여 등급을 올리든가 아니면 모든 품에 다 계를 두개씩 두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래의것을 고치고 7-9품에도 계를 두개씩 둘것을 제기하였다.

결국 류형원은 모든 품의 계를 구별없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면 정약용은 품계의 복잡성을 피하고 매우 간소화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던것이다.

실학자들은 또한 정직서반계도 단일화할것을 제기하였다.

실학자의 한사람인 류형원은 서반계도 동반계와 구별하지 말고 꼭같이 대우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무관을 갈라놓은것이 큰 페단으로 되였기때문에 이것을 본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문무관의 품계를 구별하지 말것을 주장하였다. 류형원은 이 제안을 내놓는것으로 조선봉건왕조의 중문경무정책을 반대하였던것이다.

정약용은 서반계의 1품의 직위는 무신들에게는 주지 않고 다만 문관에게만 주며 정2품은 선덕장군 모모위상호군, 종2품은 분무장군 모모위중호군, 3품은 절충장군 모모위부호군, 4품은 선략교위 모모위사직, 5품은 창신교위 모모위부사직, 6품은 병절부위 모모위사과, 7품은 적순부위 모모위부사과, 8품은 승의첨위 모모위사정, 9품은 효력첨위 모모위부사정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 모모위(某衛)라는것은 룡양위, 호분위를 비롯한 위를 의미한다.

정약용이 제기한 서반계의 명칭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중문경무정책의 후과를 찾아볼 수 있다.

정약용은 서반계에서 제일 높은 1품은 문관들이 가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수들은 대체로 2품에 있는데 무엇때문에 3품이하를 장군이라 부르겠는가고 하였으며 특히는 문관의 품계를 무관직에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면서 그는 현재 5위가 폐지되었지만 마땅히 룡양위, 호분위, 우림위를 만들어서 문관은 룡양위에, 무관은 호분위에 불이며 문관도, 무관도 아닌자는 우림위에 불여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정약용은 명칭만 보아도 문관과 무관이 구별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 조의 중문경무정책의 후과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류형원과 정약용은 서로 상반되는 제안을 제기하였다. 즉 류형원은 문무관의 차 별을 반대하였다면 정약용은 문무관을 구별하여 품계를 주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던것이다. 정직계개편과 관련한 실학자들의 견해는 셋째로, 품계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관료군을 편성하자고 주장한것이다.

15세기 품계제에 의한 관료군편성을 보면 정1품-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이상은 1관료군으로,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로부터 종6품 선무랑까지는 2관료군으로, 정7품 무공랑으로부터 종9품 장사랑까지는 3관료군으로 되여있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옛날에는 왕에게서 임명을 받는것이 아홉에 불과하였다.(례경에 씌여있다.) 지금 만약 18품계를 각각 2급으로 나눈다면 그 등급이 36층이 된다. 옛적부터 36층으로 품계를 정한 례가 없었다. … 옛 적에는 7품만으로도 나라가 운영되고 백성들이 편안하였는데 지금에는 반드시 36층으로 나누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리익이 있겠는가. 관리들의 품계를 단지 9품만 두되 1품, 2품에만 정, 종의 등급을 둔다. 정1품은 3공이 되고 종1품은 3소가 되며 정2품은 상대부가 되고 종2품은 중대부가 되고 3품은 하대부가 되며 3품이하는 결국 정, 종의 차이가 없이 4품, 5품이 상사가 되고 6품, 7품이 중사가 되고 8품, 9품이 하사가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우로 삼대의 제도를 강구할수 있고 밑으로 백관의 질서를 바로잡을수 있다.》\*고 하면서 관료군형성의 새로운 개혁안을 제기하였다.

## \*《경세유표》권3 천관수제 동반관계

우의 자료를 보면 3품이상은 1관료군, 4-5품은 2관료군, 6-7품은 3관료군, 8-9품은 4관료군으로 된다.

이것은 여러 마디에 기초한 관료군을 형성하자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첫 봉 건국가였던 고구려의 관료군편성원칙과 거의 같은것이였다.

이처럼 실학자들은 이전시기 정직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편할데 대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정직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편안의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정직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편안의 진보성은 우선 정직계를 제정하는데서 종친계, 의 빈계와 동반계의 차이, 문무관의 차별을 없애려는데로부터 나온 개편안이였다는데 있다.

품계는 조선봉건왕조가 지배계급내부에서 계층적인 봉건관료질서를 강화하려는데로 부터 내온 제도인것으로 하여 그 내부에는 일련의 신분적차이가 있었다.

례하면 정직동반계는 문관출신들만이, 서반계는 일부 문관출신들뿐아니라 무관출신들이, 종친계는 임금의 종친들, 의빈계는 공주나 옹주들에게 장가든 사람들에게 주는 품계로서 그 지위의 차이가 매우 심하였다.

이러한 신분적차이는 지배계급들속에서 불만을 야기시켰다. 왜냐면 문관이나 무관, 종친과 의빈들은 서로 같은 정직계를 받고있었지만 여기서도 제일 우선시된것은 정직동 반계였으므로 그 격은 달랐다.

정직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편안의 진보성은 또한 정직계의 종류를 단일화하고 그에 따르는 등급도 하나로 일치시켜 복잡한 관리등급질서를 바로잡자는데 있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각 품마다 반드시 2등급씩 두었는데 이것도 번쇄하기만 하고 요약성이 적다.》고 하면서 품계의 종류뿐아니라 한 품에 한개의 등급만 두자고 제기 하였다. 당시 품계의 매 종류마다에는 품이 2개, 계가 2개씩 있어 복잡하였다.

례하면 정직동반계의 2품에는 정과 종 두개로 나누어져있었으며 계 역시 정2품에 정 헌대부, 자헌대부로, 종2품에도 가정대부, 가선대부로 구분되여있었다. 또한 종친계도 품 이 정과 종으로 계도 2개씩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같은 정2품이라도 그 명칭은 서로 달랐으며 그 격도 서로 달랐다.

이로부터 실학자들은 봉건국가의 관리등급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하여서는 품계의 품과 계를 각각 1개씩 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던것이다.

이 제안은 관리등급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있어 그 운영에서 제기되던 복잡성을 극복하고 벼슬의 독점화를 실현하려던 특권관료층의 벼슬등급제도를 반대한것으로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직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편안은 제한성도 가지고있었다.

제한성은 우선 봉건적품계제도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폐단의 근원이 품계제도 그자체에 있는것으로만 간주하고 그것을 바로잡자는데만 그치였다는것이다.

당시 실학자들은 품계제도운영에서 나타나고있는 모든 페단이 품계의 종류나 해당 품계의 등급, 그 명칭들의 복잡성을 바로잡으면 되는것으로 여기였다.

제한성은 또한 실학자들이 가지고있던 계급적제한성으로부터 신분평등, 벼슬의 완화등 봉건국가의 모든 통치제도를 개편할수 없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봉건국가 그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데 있었다.

실학자들은 량반출신들로서 국왕에 대한 봉건충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에 물젖어있는 것으로 하여 품계제도운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것만을 개편하려는 소극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17세기이후 정직계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편안은 일련의 제한성은 있었지만 당시 문란해진 봉건적품계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편하기 위한것으로서 의 의를 가진다.

실마리어 정직계, 선무랑